

---

2015년

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 운영계획서

---



사단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 
법인 Seoul Metropolitan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



**access/use/moving**  
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  
ATAC Arnenity Technical Jung-gu Assistans Center For The Disabled, etc

# 2015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구지원센터 운영계획서

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물의 접근,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해를 촉진하고자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함.

## □ 운영개요

- 운영주체 :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
- 운영인력 : 총 3명

## □ 운영현황

### ○ 조직 및 구성

#### ◆ 구 지원센터(3명)

- 센터장(1명) :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
- 기술요원(1명) : 기술지원 및 사용승인, 관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업무 담당
- 행정요원(1명) : 일반 행정업무와 회계를 담당하며, 민원접수 및 편의시설 홍보업무, 모니터링 사업 담당

### ○ 사업내용

- ◆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및 기술적 지원
- ◆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
- ◆ 건축허가기관(시청 및 구청)과 연계하여 편의시설 건축협의 시 기술 지원서를 통한 업무 및 사용승인 관련 현장 업무지원
- ◆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
- ◆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자치구에 신고 및 의견제시

## □ 운영방법

- 공공시설물 및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설치대상 건물 및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편의시설물에 대하여 장애당사자들에게 적정설치 및 편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미비 된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토록 시설주관기관에 건의하도록 함.
-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시설주관기관(시청 및 구청)에 공공시설 등 신축건물의 허가 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센터에 의뢰하도록 하고, 이에 따른 기술적인 의견을 시설주관기관에 개진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함.
- 관내의 편의시설 적정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, 관할구청 주무과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.
- 편의시설설치시민추진단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캠페인 실시를 위하여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·배포하고, 언론매체에 홍보하며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, 지역 내 미비 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.

## □ '14년 운영실태

- 2014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사업 운영관리 및 실적
  - ◆ 모니터요원 교육, 근무상황, 점검업무 관리
  - ◆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242건
  - ◆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3,363건
- 관광지(공원, 유적지 등)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8개소
- 건축협의 관련 종합실적

(단위:건)

계	건축허가	사용승인	민원상담	홍보	실태조사	사전점검
613	307	128	106	120	77	50

□ '15년 운영계획

- 신축 등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
- 「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」 살피미 교육 및 운영 관리
- 「서울형 무장애인증」 신청건물 실태조사
-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
-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
- 편의시설홍보캠페인(ex-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홍보)
- 장애 체험 및 인식개선사업 「희망나루」 활성화
- 편의시설인식개선용 영상물 「나자립의 하루」 활용한 교육
- 장애인편의시설체험 「나들이 사업」

□ 행정사항

- 보조금
  - ◆ 연간보조금 86,000천원(시비50%,구비50%)

(단위:천원)

총 금액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
86,000	76,700	8,100	1,200

- 회계 관리
  - ◆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용
  - ◆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